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경찰법」 개정(‘21.1.1 시행)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 신설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7만2700원으로”를 “7만3400원으로”로, “7만1천원”을 “7만17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780만7천원”을 “788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56만6천원”을 “865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60만8천원”을 “768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87만1천원”을 “896만1천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방

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의3)의 경력 100퍼센트 · 1의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 한한다]은 70퍼센트 이내. 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유사경력(가. 전문·특수경력 중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 관련)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3)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80퍼센트 이내
	3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3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4)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6)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	100퍼센트

공무원경력	· 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경노무 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축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비고

1.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유사경력(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퍼센트이내
	2)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이내
	4)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 규정」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80 퍼센트 이내
	4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 퍼센트 이내
	4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 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6)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그 밖의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70 퍼센트 이내
	7)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 퍼센트 이내
	8)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경노무 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 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비고

1.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유사경력(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대상인원의 20%	직급별 기준액의 8%
A등급	대상인원의 30%	직급별 기준액의 6%
B등급	대상인원의 40%	직급별 기준액의 4%
C등급	대상인원의 10%	직급별 기준액의 0%

비고

1.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38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u>7만2700원</u> 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u>7만1천원</u> 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u>7만3400원</u> <u>으로</u> ----- <u>7만1700원</u> ----- ----- -----.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 -----.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780만7천원</u>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 ----- ----- <u>788만7천원</u>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2. ----- -----

856만6천 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0만8천 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87만1천 원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생략)

② 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 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직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

865만3천 원

3. -----

768만5천 원

4. -----

896만1천 원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